

2023학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안)

안 건 번호	4
-----------	---

제안년월일 : 2023. 3. 30.

제안자 : 학교장

소관 : 나 0 0

1. 제안 이유

- 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교 발전기금 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당해년도 본교 재학생 및 차기년도 입학생(전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포함) 계획을 정하고자 함.
- 나.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통일성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당해년도 본교 재학생 및 차기년도 입학생(전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포함)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액 범위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나. 추진 일정

순	주 관	구 분	내 용	시 기
1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장학금 지급 계획 심의·의결	2023.3.
2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보고	2023.3.~ 2023.2.
3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심의·의결	2023.3.~ 2024.2.
4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장학금 지급(보호자 계좌이체)	2023.3.~ 2024.2.
5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장학금 집행내역 공개. 결산	2024.03.

붙임 2023학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안) 1부. 끝.

[붙임]

2023학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

익산한별초등학교

※ 2023학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안)은 졸업생 상장 수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서로 분리하여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따라서 이 계획은 졸업생 사정 산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계획 전체를 제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급 범위 등) 계획에 중점을 두어 심의·의결함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2023학년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시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육복지위원회 운영)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장학금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1. 조 직

가. 위원장 : 교감

나. 위 원 : 1학년~6학년 복지담당교사, 업무담당자, 교육복지사

2. 활 동

가. 당해연도 졸업생 장학금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수여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

나. 영생교회 장학금 수여 대상자 선정

다. 위 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시 이 임시회의 개최

3. 상장 수여 및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가. 학업 태도가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나. 수상자(기탁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

다. 졸업생 수상자의 순위는 수여자 평정 일람표에 의해 선정된 순서로 한다. 단, 동점일 경우에는 수상실적, 출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라. 특정 학생을 지명한 경우에는 지명 학생으로 하고(준거집단 등) 지명자가 없을 경우는 사정 방침에 의거하여 수여한다.

4. 장학금 지급 사정

가. 장학금 기탁자가 지급기준을 제시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다.

나. 졸업생: 특정한 지정이 없을 경우, 지급 순위는 수여자 평정일람표에 의해 선정된 순서

로 한다.(단, 동점일 경우 ① 수상실적, ② 출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동점자 발생 시 본교 재학기간이 긴 자에게 높은 순위를 지정한다.)

다. 기타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기탁자의 뜻에 따라 해당되는 자를 추천하고 그 외 경우는 졸업생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 하여 선정한다.

라. 장학금 지급금액 범위

- 1) 졸업생: 전년도 장학금 지급액 수준 내외(2023년 졸업생에 한함, 이후 재조정)
- 2) 재학생: 전체 학생(장학금 기탁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3) 남은 장학금: 차기년도 이월 운용(지속적인 학교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4) 단, 당해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금액이 1), 2)항의 미충족시 교육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금액을 조정하여 집행하되 운영위원장에게 사전 구두 및 서면보고를 통하여 알리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고 및 심의·의결을 한다.

제 3조(장학금 대상 선정 및 지급기준)

지급 구분	내용	비고
가. 장학금 대상 선정 및 지급 기준	1) 졸업생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2023학년도 졸업사정 석차 순으로 지급한다. 2) 영생교회 및 단체나 개인 장학금 지급 기준은 교육복지위원회에 담임 추천된 학생 중에서 학생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교육복지위원회 협의를 통해 지급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3) 수여기관이나 수여자의 특수한 요청에 의한 장학금은 종합성적 사정 결과에 따른 순위별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학생에게 학교 기준 부합 여부에 관계 없이 수여한다.	
나. 장학금의 범위	1)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장학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상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외상으로 간주하고 대외상 수여 기준에 따라 수여한다.	
다. 장학금 지급 제한 사유	1) 본교 장학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이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 나) 성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학생 다) 금품 갈취 등으로 본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제 4조 이 규정은 본교 교육과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